

綜合所得稅制度 解説과 申告納付對策

金 翼 來

公認會計士

大統領令 第6643号(1973. 4. 23公布)로 改正된 所得稅法 施行令에서는 所得綜合對象者를 大幅擴大하여 綜合所得稅納稅義務者의 範圍를 擴大하였고 또 當局에서는 明年부터는 綜合所得稅制度를 世帶別 綜合所得稅制度로 大幅改正한다고 한다.

그러나 1974年 5月 31日까지 申告納付할 綜合所得稅는 現行稅法에 依하여야 한다.

以下 現行 綜合所得稅制度의 概要와 綜合所得稅 計算實例을 들어본다.

一. 分類所得稅制度와 綜合所得稅制度

所得稅의 課稅方法에는 세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겠다. 그 하나는 納稅者에 歸屬되는 各種의 所得을 一括하여 課稅하는 綜合所得稅制度와 各種의 所得을 그 所得源泉에 따라 不動產所得, 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 其他所得, 勤勞所得으로 나누어 個別的으로 課稅하는 分類所得稅制度 및 分類課稅所得稅와 綜合課稅制度의 併用的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綜合所得稅制度는 1955年 1月 1日부터 1958年 12月 31日까지 分類 所得稅制度와 併用하여 적용하다 廢止하였고 다시 法律 第1966号로 制定된 現行 所得稅法(1967. 11. 29 公布, 1968.

1. 1. 施行)에 限定的 綜合所得稅制度를 채택하고 지난 71年 12月 28日 同 內容이 大幅 改正되어 (法律 第2315号) 現在에 이르고 있다.

綜合所得稅制度는 원래 高所得層에 重課하고 低所得層에 輕課하는 租稅負擔 公平의 原則에 符合되기도 하고 한편 稅源確保라는 國家財政 政策上 見地에서도 要請되는 制度이다.

그러나 이를 運用하는 데는 相當한 難點이 있다.

各國의 所得稅制度에 대하여 살펴보면 綜合所得稅制度는 獨逸·美國 등에서 發達한 制度이며 分類

課稅制度는 美國·불란서·伊太利 등에서 發達한 制度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分類所得稅 制度를 並課하고 있는 實情이다.

二. 綜合所得稅制度의 長·短點

1. 長 點

前述한 바와같이 綜合所得稅制度는 個人에게 歸屬되는 모든 所得을 綜合하여 各種控除制度와 累進稅率을 적용하므로써 所得稅에 理想과 合理性을 실현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綜合課稅의 長點은 各種 控除制度와 累進稅率을 적용함으로써 個人別 事情에 適한 考慮과 個人의 負擔能力에 따른 課稅를 行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最低生活費의 免稅, 災害損失 醫療費 내지 保險料 支出 등의 控除 制度를 廣範圍하게 실시 하므로써 所得稅의 本質의 하나인 社會政策의 手段을 통하여 그 實效를 充分히 거둘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適當한 累進稅率의 적용으로 財政收入의 伸縮性을 통하여 財政政策의 效果를 發揮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行 綜合所得稅制度에는 扶養家族 控除制度나 災害損失, 醫療費乃至 保險料 등의 控除制度가 없고 改正될 同制度에는 이러한 控除制度가 包含될 것으로 사료된다.

綜合所得稅는 所得의 綜合과 超過累進稅率의 적용을 制度의 基本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納稅者의 担稅能力을 量的으로 把握하여 租稅負擔의 實質의 公平을 期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言及한 바와같이 例外的으로 特定の 所得에 分離課稅가 利用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根據는 主로 所得의 성질에 비추어 다른 所得과 綜合하여 課稅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所得을 綜所하여 하는 것보다 租稅負擔의 실질적 公平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당해 納稅者의 質的 担稅力에 着眼한 것이므로 그分離된 所得에 대한 課稅에 관하여서는 租稅負擔의 실질적 公平을 實現하게 되는 것이다.

課稅標準의 算定을 위한 所得稅別 計算方法은 이러한 취지에서 一面 徵稅上의 便宜도 고려하고 있으나 그 所得計算에 있어 綜合 또는 分離 計算方法이 採用되는 것이다.

2. 短 点

綜合所得稅의 이러한 長점은 곧 短点으로 浮刻된다.

所得計算과 그 手續의 복잡이 全的으로 納稅義務者의 申告制度에 依存하게 됨으로 租稅에 대한 知識과 覺醒이 극도로 昂揚되어 있지 않는 限도 리어 租稅회피나 脱稅의 素地를 提供하며 따라서 所得把握이 용이한 給與所得者나 低所得者에 대한 重課가 結果的으로 야기되는 경향이 있고 脱稅를 방지 하기 위한 稅源調査는 各個人의 私生活에 干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不必要한 麻煩을 招來하기가 쉽다.

또는 綜合所得에 있어서의 徵稅上의 번잡한 納稅節次는 相當한 水準의 稅務行政技術을 要求한다.

三. 現行 綜合所得稅制度的 概要

우리나라의 綜合所得稅制度는 從前 分類 所得制度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各分類所得稅別 一定金額以上の 高所有者에 限하여 住所地에서 各 所得을 合算하여 課稅하는 制度이다.

即 現行 制度는 分類 課稅所得을 合算하여 重課한다는 것과, 한가지 所得發生者라도 高所得者인 경우에는 重課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이것은 分類所得稅制度에서 綜合所得稅制度로 轉換시키기 위한 過度的 制度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나라 所得稅 制度로는 큰 轉機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1. 納稅義務者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는 다음 各號의 要件에 全部 該當되어야 하고 이중 한 要件이라도 該當되지 아니하면 納稅義務가 없다.

①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6月이상 居所를 둔 個人

② 1年間(1月1日~12月31日 以下同一) 分類課稅 所得金額(非課稅所得免除所得, 基礎控除金額등을 包含하지 아니한 다음表의 綜合所得金額)이 300萬圓 以上인 者.

③ 다음의 所得綜合對象者(1年間)

區 分	金 額
不動產所得	50萬圓以上
配當利子所得	"
事業所得	100萬圓以上
勤勞所得	180萬圓 (註)
其他所得	30萬圓

(註) 甲種勤勞 所得者는 1年中 月 課稅所得金額이 15萬圓 以上の 實債이 있는者, 乙勤者는 45萬圓 以上の 實債이 있는者는 所得綜合對象者로 看做한다.

綜合所得金額 = 1年間 總所得金額 - (預金·積金·賦金 등의 利子 + 山林所得 + 年金 또는 退職給與 + 非課稅所得 + 免除所得(所得稅法 第8條 3의 規定에 의한 免除所得除外) + 畜產業에 대한 減免所得 +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減免所得 + 緊急命令 第62條 3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所得 + 基礎控除額(事業所得, 勤勞所得) + 住宅福券 當錢金

2. 綜合所得稅納稅義務의 排除

年間所得額이 300萬圓 이상인 자라 하더라도 分類課稅 所得金額이 前期 各號의 綜合所得 對象金額에 未達하는 者에 대하여는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없다. (令 第124條)

例를 들어 어느 特定人의 年間所得으로 事業所得 95萬圓, 配當利子所得 41萬圓, 甲種勤勞所得 140萬圓, 不動產所得 40萬圓, 其他所得 25萬圓 合計 358萬圓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各分類所得金額은 綜合所得對象 金額에 各各 未達하기 때문에 綜合所得稅를 賦課할 수 없는 것이다. 反對로 他 所得은 하나도 없고 事業所得의 課稅所得(他 分類 課稅所得 중 어느 所得이라도 同一)이 年間 300萬圓 이상인 경우는 綜合所得稅 納稅義務가 있다.

3. 綜合所得稅의 課稅地

綜合所得稅의 課稅地는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로 되어 있다(法 第60條).

이것이 各事業場에서 賦課하는 分類 所得稅와 다른 點이다. 萬一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가 2個以上인 경우에는 그 主된 住所地 또는 居所地(즉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課稅地로 하고 있다.

(令 第125條, 規則第92條).

4. 綜合所得稅의 計算

綜合所得稅額은 다음의 区分에 의한 各 稅率을 遞次로 適用하여 계산한 金額의 合計額에 綜合所得稅 加算稅를 加算한 金額에서 名 分類課稅 所得의 算出稅額(實際納付稅額이 아님)을 控除한 金額이다.

다만 綜合所得金額에 申種配當利子所得(紙上配當金을 包含한다)이 包含한 경우에는 그 支給者別 甲種配當 利子所得에 金額別로 非合開法人 法人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金額의 100分の 50에 相當하는 金額(法64)과, 企業公開促進法第 13條의 規定에 의거 公開法人의 株主로서 發行株式總數의 30%以下를 所有한 株主가 그 公開 法人으로부터 받는 配當者所得이 綜合所得 金額에 合算된 경우에는 綜合課稅算出稅額中 그 配當所得分에 該當하는 稅額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한다(法 第13條).

그러나 稅額控除에 있어서 分類課稅所得의 算出稅額과 甲種配當所得에 대한 非公開法人의 稅率을 적용한 金額의 合計額은 綜合 課稅算出稅額에 同 加算稅를 加算한 金額의 合計額을 超過하지 못하며 또 施設積立金이 紙上配當所得으로 된 경우에는 그 紙上配當所得에 대한 稅額에 當해 積立金을 積立한 날로부터 그 積立金이 紙上配當所得으로 決定된 날까지 그 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辺5錢으로 계산한 金額을 分類課稅 算出稅額으로 公제하지 아니한다.

稅額計算過程과 稅率을 算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綜合所得金額} \times \text{稅率} = \text{綜合課稅} \\ & \hspace{10em} \text{算出稅額} \\ & \text{綜合課稅 算出稅額} - \text{分類課稅算出稅額} - \\ & \text{配當金에 대한 세액公제(法第64條)} - \text{配} \\ & \text{當金에 대한 公제세액(企業公開促進法} \\ & \text{第13條)} = \text{綜合課稅 決定稅額.} \end{aligned}$$

課稅 所得 稅額	稅 率	累進控除額
300萬원 以上の 金額	30%	—
300萬원을 超過하는 金額	50%	600,000
600 " "	55%	900,000
1,500 " "	60%	1,600,000
4,500 " "	65%	3,900,000

5. 綜合所得金額의 申告 및 自進納付 節次

綜合所得金額의 申告 및 自進納付節次는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가 當該年度分(1973. 1. 1 ~ 1973. 12. 31. 까지의 所得分)의 綜合所得金額을 그 翌年(1974年) 5月末日까지 住所地 또는 居所地의 所管稅務署長에서 「綜合所得稅에 대한 所得金額 申告 및 自進納付計算書」에 申告所得金額 內訖을 添附하여 自進申告 納付토록 되어 있다. (法 第65條, 第66條 및 令 第128條 第1項, 第129條)

萬一 綜合所得稅納稅義務者가 申告를 한 後 住所地 또는 居所地를 移轉한 때에는 그 移轉한 날로부터 10日以内に 前住所地 所管稅務署長과 新住所地 所管稅務署長에게 各各 「綜合所得稅 納稅義務者 住所地 變更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또한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있는 者가 綜合所得稅의 申告納付前에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綜合所得稅를 申告 納付하여야 한다. (令 第128條 第3項)

6. 綜合所得稅의 加算稅

만일 綜合所得稅 納稅義務가 있는 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와 綜合所得稅額을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綜合課稅 算出稅額에 다음의 金額을 加算하여 稅額으로 徵收하도록 하고 있다.

(法 第68條)

가. 申告不誠實加算稅

申告를 하지 아니한 所得金額의 綜合課稅算出稅額에서 分類課稅算出稅額과 甲種配當利子 所得에 대한 控除稅額을 控除한 金額 또는 申告하여야 할 所得金額에 該當하는 稅額의 100分の 30에 相當하는 金額을 申告不誠實加算稅로 徵收한다.

申告不誠實加算稅의 計算算式은 다음과 같다.

(綜合課稅 算出稅額-分類課稅算出稅額 및 申告하여야 할 甲種配當利子所得에 대한 控除稅額) × $\frac{申告하여야 할}{100}$

$\frac{金額에 未達한 金額(無申告의 경우는 綜合所得金額)}{綜合 所得 金額} \times \frac{30}{100}$

나. 納付不誠實加算稅

綜合所得稅를 納付하지 아니하였거나 納付 하여야 할 金額에 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納付하지 아니한 稅액 또는 未達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納付不誠實 加算稅로 徵收한다. 이 때 納付不誠實加算稅는 다음과 같이 計算한다.

綜合課稅算出稅額-(分類課稅算出稅額 및 甲種配當利子 所得에 대한 控除稅額+自進納付稅額) × $\frac{10}{100}$

그러나 綜合所得稅額을 申告 納付한 後 紙上配當의 決定이 있거나 剩餘金의 處分에 의한 賞與金의 支給이 된 때 또는 分類課稅所得金額의 決定後 當該 課稅所得金額의 變動이 있음으로 因하여 綜合所得稅의 納付義務가 생기거나 이미 決定된 綜合所得金額과 差額이 생긴 때에는 그 決定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5日以內에 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하게 되면 申告不誠實加算稅 및 納付不誠實 加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7. 綜合所得金額의 決定

政府는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있는 者가 申告한 申告書에 의하여 當該年度의 綜合所得金額을 翌年 6月末日까지 決定한다. 그러나 다음의 事由가 發生하여 綜合所得金額의 增減이 있을 때에는 이를 更正決定할 수 있다.

가. 綜合所得金額中 申告期限 이후 紙上配當의 決定이 있거나 剩餘金處分에 의한 賞與金이 支給된 때.

나. 定期分의 分類課稅所得金額의 決定後 當該 課稅所得金額의 變動이 있을 때.

四. 綜合所得稅額 計算案例

<事例 1>

勤勞所得만으로 綜合所得稅 納稅義務가 있는 경우

1) 홍길동은 甲会社 代表理事로서 在職하고 있어 每月 甲社에서 350,000원씩 給料를 支給받고 있다. 홍길동의 1973年度 所得에 대한 74年 5月31日 申告納付할 綜合所得稅額을 算出하라.

<解答> 1. 分類課稅算出稅額

$(350,000 - 15,000) \times 48\% - 44,200 = 118,600$
 (基礎控除額) (累進控除額)

$118,600 \times 12 = 1,423,200$

2. 綜合課稅決定稅額

(1) 算出稅額

$3,000,000 \times 30\% = 900,000$

$\frac{1,020,000 \times 50\% = 510,000}{4,020,000(註) \quad 1,410,000}$

(註) $4,200,000 - 180,000$ (12月分의 基礎控除額) = $4,020,000$

(2) 綜合課稅 決定稅額

$1,410,000 - 1,423,200 = \triangle 13,200$ (원)

2) 勤勞所得地가 그 以上인 경우

김영철은 每月 支給받는 勤務地가 네곳으로 1973年度中 支給받은 勤勞所得은 다음과 같다.

김영철이 1974年 5月 31日까지 自進納付할 綜合所得稅額을 計算하라.

甲勤務地	1,800,000(月平均 150,000)	主된 勤務地
乙 "	960,000(月平均 80,000)	
丙 "	840,000(月平均 70,000)	
計	3,600,000	

<解答> 1. 分類課稅 算出稅額(甲勤稅)

(甲勤務地)

$(150,000 - 15,000) \times 32\% - 16,200 = 27,000$
 (基礎控除額) (累進控除額)

$27,000 \times 12 = 324,000$

(乙勤務地)

$80,000 \times 19\% - 4,400 = 10,800$

$10,800 \times 12 = 129,600$

(丙勤務地)

$70,000 \times 19\% - 4,400 = 8,900$

$8,900 \times 12 = 106,800$

(合計)

$324,000 + 129,600 + 106,800 = 560,400$

2019년 11월 21일
 2019년 11월 21일
 2019년 11월 21일

2. 綜合課稅 算出稅額

(1) 綜合課稅 算出稅額

$$\begin{array}{r}
 3,000,000 \times 30\% = 900,000 \\
 420,000 \times 50\% = 210,000 \\
 \hline
 3,420,000 \qquad 1,110,000
 \end{array}$$

(2) 綜合課稅 決定稅額

$$1,110,000 - 560,400 = 549,600 \text{ (自進申告納付稅額)}$$

〈事例 2〉 事業所得만으로 綜合所得稅 納稅義務
가 있는 경우

홍길동은 建築士事務所를 開設하고 1973 年度中
發生한 事業所得이 다음과 같다.

홍길동이 1974年 5月 31日까지 自進納付할 綜
合所得稅額을 計算하라.

- 第 1 期 1,500,000 원
- 第 2 期 2,000,000 원
- 3,500,000 원

〈解答〉 1. 分類課稅算出稅額(事業所得稅)

(第 1 期)

$$(1,500,000 - 90,000) \times 38\% - 101,500 = 434,300$$

(累進控除額)

2. 綜合課稅決定稅額

1) 綜合課稅 算出稅額

$$\begin{array}{r}
 3,000,000 \times 30\% = 900,000 \\
 320,000 \times 50\% = 160,000 \\
 \hline
 1,060,000
 \end{array}$$

(註) 綜合所得金額 = 3,500,000 - 180,000 (基礎控除
額) = 3,320,000

2) 綜合課稅決定稅額

$$1,060,000 - 1,099,600 = \triangle 39,600$$

(參考) 上記例와 같이 다른所得이 없고 勤勞所
得이나 事業所得이 한 勤務地나 한 事業場 에서만
있으며 綜合所得金額이 約 300余萬원인 경우에는
綜合所得稅로서 實際 納付할 稅額이 없게되나 이
경우에도 申告書는 提出하여야 한다.

그 理由는 申告後 稅務署의 檢査結果 勤勞所得
金額이나 事業所得金額이 追增되는 경우에 無申告
時에는 綜合所得稅 加算稅를 賦課받게 되기 때문
이다. (筆者 (26) 9908)

訂 正

2.3月號 P-73의 圖表는 아래와 같이 訂正하여再告示합니다.
日本工事費 現時勢表

生 콘 크 리 트	5,700 YEN(円) / m ²
시 멘 트	6,300 " / TON
불 록 크(A種)	100 YEN / 個
鉄 筋	84,000~80,000 YEN/TON
L. G. S.	89,000 YEN / TON
앵 글	81,000 YEN / TON
石綿 슬레이트	780 YEN / m ²
防 水 劑	1,500~5,700 YEN/18ℓ
木 材	60,000~120,000 YEN/m ²
유 리	2,500 YEN(5mm透明) m ²

(74年 1月末 現在)

p-8 「建築物의 建築抑制」欄의 対象建築物 및 適用地域의
圖表中 「現行」의 1. 対象建築物. 가) 公共建築物
“1) 學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庁舎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의 庁舎”의 誤植을 바로 잡읍니다.

會員動靜(全北支部 '74. 1月號) (誤) 金炯直 (正) 全炯直

〈1974. 2·3月號 韓國의 古建築 p. 17〉

페이지	誤	正
17	建築班研究室 提供	建築班研究室 金鴻植 撮影
17	前面包	無量壽殿 前面包
21	浮石寺 梵鍾閣 난간	安養門 난간
22	後面	梵鍾閣 後面
25	前面 上部	祖師堂 前面 包
25	키包	祖師堂 키包
25	包	安養門 包
※ 25	浮石寺 無量壽殿 高麗中 期 13世紀疎組一形式	祖師堂 架構 14世紀 柱心包 樣式
※ 26	浮石寺 祖師庵 架構 高麗 末14世紀疎組三形式	無量壽殿 13世紀 柱心包樣式
26	前面 키包	無量壽殿 前面키包
26	內部 大樑부분 架構	無量壽殿 內部 대들보부분 架構
27	宝蓋 上部	無量壽殿 宝蓋 上部
27	內部 樑樑부분 架構	無量壽殿 內部 樑樑부분 架構
27	西側 前面	祖師堂 西側面
28	前面階段	無量壽殿 前面階段
29	內部 키包부분 架構	無量壽殿 內部 키부분架構